

3번 주민투표안

<p>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될 경우 선거구 재획정 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</p> <p>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될 경우 새 선거구 획정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주 헌법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</p> <p>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조사 자료 집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뉴저지가 인구조사 결과를 적시에 받지 못할 경우 1로 끝나는 해에 실시될 주의회 선거에 맞춰 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수정안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일정을 변경하면 그 해에 기존의 선거구에서 의원들이 2년 임기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. 새 선거구는 주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다음으로 예정된 본선거부터 적용될 것입니다.</p>
<p>아니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석 설명</p> <p>이 헌법 수정안은 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될 경우 새 선거구 획정 일정을 변경하게 됩니다.</p> <p>미국 헌법에 따라 10년마다 미국의 인구 수를 집계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인구조사 결과는 주민들이 선출된 공무원들을 통해 동등한 대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사용됩니다.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조사 자료 집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각 주에 결과 전달도 지연될 수 있고 새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</p> <p>주 헌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가 완료된 후에 새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. 인구조사 결과가 지연되는 경우 선거 일정에 맞춰 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헌법 수정안은 주지사가 1로 끝나는 해의 2월 15일 이후에 연방 인구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위원회가 새 선거구 획정을 연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. 위원회는 11월 본선거 후에 그리고 2로 끝나는 해의 3월 1일 이전에 새 선거구를 확정할 것입니다.</p> <p>새 선거구는 3으로 끝나는 해의 의회 선거부터 적용될 것입니다. 그리고 다음 연방 인구조사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.</p> <p>1로 끝나는 해에 실시되는 6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에서는 상원의원 및 주의회 의원이 기존의 선거구에서 출마해 2년 임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. 2로 끝나는 해에 다른 의회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도 기존의 선거구가 적용될 것입니다.</p> <p>이 수정안은 주지사가 인구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. 또한 위원회의 11번째 위원은 주지사가 인구조사 결과를 받은 후 한달 안에 뉴저지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.</p> <p>이 수정안은 인구조사가 실시된 해의 11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주 헌법 제4조 3절 1항에 의거하여 주 정당 의장들이 임명하고 그 해의 12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주 국무장관이 인증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변경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</p>